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513

발의연월일: 2021. 4. 15.

발 의 자: 김성주 · 이용빈 · 김수흥

김민석 · 홍성국 · 이상헌

박상혁 · 허종식 · 이용호

임호선 의원(10인)

제안이유

전세계적 코로나19 확산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철저한 방역체계를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대응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반면, 성공적인 방역에 비해 의료적 측면에서는 많은 한계를 확인하였음. 특히 공공 병상 부족과 의료 인력 부족의 문제가 반복되었으며,이는 입원 대기 중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희생으로 이어진 바 있음. 또한 의료자원이 코로나19 방역 및 진료에 집중됨에 따라 기존 필수 의료서비스에도 일부 차질이 발생하기도 했음.

이에 공공보건의료 체계 전반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의 확충 등 양적 확대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도 공공적 역할이 강조되는 기능·역할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체계구축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 정부는 2020년부터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간 연계 및 협

력을 통해 필수적인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가 공백 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국에 걸쳐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사립대학병원 등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응급의료, 감염병 대응 등 필수의료를 제공・연계・조정하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2021년 현재 15개의 권역책임의료기관과 35개의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 중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책임의료기관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공공보 건의료 수행기관과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 어 책임의료기관 등을 포함해 공공보건의료의 개념과 역할 범위를 확 장해야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의 지원을 위해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 내에 적절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위탁이 어려우며, 때문에 별도 법인 등을 설치해 전문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위탁 운영 방식을 포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보건의료의 실질적 수행 범위와 기관을 확대하고, 협력 체계의 원활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전달체계의 범위를 넓히며, 책임의료기관의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위탁 대상을 확대하여 공공보건의료 체계

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또한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련 계획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보다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책임의료기관, 심뇌혈관질환센터, 응급의료기관, 지역암센터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4호).
- 나.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구성 요소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추가함(안 제2조제5호).
- 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에 전달체계 관리, 인력·병상 ·시설 확보, 취약 지역·계층·분야 지원, 공중보건 위기 대응 등 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안 제4조제2항).
- 라. 책임의료기관의 역할, 지정, 보고 의무, 산하 공공의료본부 설치, 비용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 마.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 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22조제2항).
- 바.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 청문에 관한 조항에 기존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또는 공공전문진료센터 외에 책임의료기관도 추가함(안 제15조, 제18조, 제19조).

법률 제 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에 마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마. 제14조의2에 따른 책임의료기관
- 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
- 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 및 제30조의3에 따른 지역외상 센터
- 아. 「암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 자.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제외한 보건의료기관 중 같은 조 제4호 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제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구축·관리 방안

- 5. 공공보건의료 인력, 병상, 시설 등 자원의 확보 및 관리 방안
- 6. 공공보건의료가 취약한 지역·계층·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
- 7. 공중보건 위기 상황 시 대응 방안
- 8.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조의2(책임의료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 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책임의료기 관을 지정할 수 있다.
 - 1.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 기획 · 연구 및 조정
 - 2.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 체계의 조정·관리
 - 3. 보건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파견 교육
 - 4. 감염병 예방 및 진료, 응급의료, 모자보건사업, 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보건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 ③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원활한 제공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원활한 제공 및 해당 보건의료기관 내부 또는 외부와의 협력을 강 화하기 위해 공공의료본부를 설치·우영해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책임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책임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 공공의료본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공전문진료센터에"를 각각 "공공전문진료센터, 책임의료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공전문진료센터의"를 "공공전문진료센터, 책임의료기관의"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공전문진료센터가"를 "공공전문진료센터, 책임의료기관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4조제3항을"을 "제14조제3항, 제14조의2제3항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4조제5항에"를 "제14조제5항, 제14조의2제6항에"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공공전문진료센터로"를 "공공전문진료센터, 책임의료기관으로"로 한다.

제19조 중 "공공전문진료센터의"를 "공공전문진료센터, 책임의료기관의"로 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중 "공공보건의료기관에"를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4
란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	
관을 말한다.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u><신 설></u>	마. 제14조의2에 따른 책임의
	<u>료기관</u>
<u><신 설></u>	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u>센터</u>
<u><신 설></u>	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
	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 및 제3
	0조의3에 따른 지역외상센
	<u>터</u>
<u><신 설></u>	아. 「암관리법」 제19조에
	<u> 따른 지역암센터</u>
<u><신 설></u>	자.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건복지

5.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 의 보건의료기관 간의 역할 수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가. ~ 라. (생 략) <신 설>

- 제4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① 저 (생 략)
 -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 1. ~ 3. (생략)
 -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 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5	
<u>.</u>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제	
외한 보건의료기관 중 같	
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	
보건의료 수행기관	
(현행과 같음)	
②	
1. ~ 3. (현행과 같음)	
4.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구	
축・관리 방안	
5. 공공보건의료 인력, 병상, 시	
설 등 자원의 확보 및 관리	

<신 설>

<신 설>

<신 설>

③ ~ ⑤ (생 략) <신 설> 방안

- 6. 공공보건의료가 취약한 지역 •계층•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
- 7. 공중보건 위기 <u>상황</u> 시 대응 방안
- 8.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 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책임의료기관의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할수 있다.
- 1.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 기획·연구 및 조정
- 2.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공공보건 의료 전달체계의 조정·관리
- 3. 보건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파견·교육
- 4. 감염병 예방 및 진료, 응급

- 의료, 모자보건사업, 환자의지역사회 연계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 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보건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 ③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의 원활한 제공 등을 위한 계 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 ④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원활한 제공 및 해당 보건의료기관 내부 또는 외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료본부를 설치・운영해야 한

제15조(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 저결과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및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의 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또는 <u>공공전문진료센터에</u> 대한 재정 적·행정적 지원을 다르게 할 수 있다.

	<u>다.</u>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책임의료기관의 시	설
	·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	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원
	<u>할</u> 수 있다.	
	⑥ 그 밖에 책임의료기관의	지
	정 기준, 방법 및 절차, 공공	의
	료본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u>구.</u>
1	15조(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	행
	결과 평가) ①	
	공공전문진료센터, 책임의	豆
	<u>기관에</u>	
	②	
	공공전문진료센터, 책임의료	<u>기</u>
	관에	
	<u>.</u>	
	③	
		<u>전</u>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를 공표하거나 평가결과와 관 련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생략)

- 제18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 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 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또는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 야 한다.
 - 1. 2. (생략)
 - 3. 제13조제3항 또는 <u>제14조제3</u><u>항을</u> 위반하여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13조제6항 또는 <u>제14조제5</u><u>항에</u>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5. 6. (생략)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 ① -	
전문진료센터, 책임의회	<u> 로기관이</u> -
1 O /원레리 가O)	
1.·2. (현행과 같음) 3	레1/조계9
5 <u>/</u> 항, 제14조의2제3항{	
<u> </u>	<u> </u>
4	에14조제5
- " 항, 제14조의2제6항°	
	···
5.•6. (현행과 같음)	
②	

된 의료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의료취약 지 거점의료기관 및 <u>공공전문</u> 진료센터로 지정받을 수 없다.

③ (생략)

제1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또는 <u>공공전문진료센터의</u>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한다.

제22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운영) ① (생 략)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u>공공전문진</u>
<u>료센터, 책임의료기관으로</u>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청문)
고고리[] 기기기 기기 - 기시시그 기
- <u>공공전문진료센터, 책임의료기</u> <u>관의</u>
 제22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세22조(등등모신의료 시원인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
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 는 단체,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u>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u> 에
<u>-''</u>
<u>.</u>
· ③·④ (현행과 같음)